규칙 제 호

수탁시설 운영규칙

2007년 5월 3일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대학의 학생교육, 졸업생의 취업, 교원의 연구,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학교법인새빛학원 또는 안산대학 명의로 수탁받는 시설(이하 "수탁시설"이라한다)의 조직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의 위임) ①학교법인새빛학원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대학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안산대학 총장은 위임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령·지침 등에 따라 수탁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수시로 지도·감독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(조직) 수탁시설에는 위탁기관에서 정한 조직과 인원을 두되, 효율적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의 장) ①수탁시설의 장은 안산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수탁시설의 장은 시설을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수탁시설의 장의 임기는 수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안산대학 총장이 정한다.

제5조(업무대리) 안산대학의 교원인 수탁시설장은 비상근으로 하며, 기관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수탁시설에 재직하는 인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종사자) ①수탁시설의 종사자는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분장 업무를 담당한다.

②종사자는 수탁시설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시설장이 임명하되, 종사자의 고용기간은 수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장 운 영

제7조(신규 및 재 수탁) 대학에서 신규로 수탁을 신청하거나 재 수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안자와 담당 학부·과장의 책임 하에 수탁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(또는 이사장의 승인)을 얻어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계획) 수탁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2월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 및 관리) ①이 시설의 감독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시설장은 시설 운영현황을 법인학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수탁시설의 세부운영사항은 시설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시행하되,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시설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회) ①수탁시설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1. 사업계획 승인 및 인사에 관한 사항
2. 예·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관련되는 중요사항

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수탁시설장, 관련학부·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1조(행정사항) 수탁시설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는 안산대학 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수사항 등) 수탁시설의 인사·복무·회계·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 규칙과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복무 및 근로규칙 등을 제정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3조(재정) 수탁시설의 재정은 위탁기관의 보조금 및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하며,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계연도) 수탁시설의 회계연도는 위탁기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연대보증인) 안산대학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가 수탁시설의 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신원 및 재정에 책임질 수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원보증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 행 일) 이 규칙은 2007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시설의 장과 인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, 제15조의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